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60호

「은행법」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> 201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- 1. 은행의 명칭 : 우리은행
- 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15. 10. 14일
- 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: '15. 10. 22일
- 4. 부수업무의 내용 : 『은행 캐릭터』저작권 라이선싱
- 5. 기타사항 : 은행업감독규정 개정(제25조제2항제3호, '14.11.26)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
 -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·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
 -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·공개정보 제공
 -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
 - ▷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, 리모델링자금보증(조합원이주비, 부담금, 사업비 보증), 주택구입자금보증, 주택임차자금보증,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전세금안심대출보증,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